

I.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묘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내나무갓기 캠페인 관련조항 ></p> <p>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 산림청장은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 및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절 산림용 중·묘 생산 등</p> <p>제16조(중·묘생산업자의 등록) ①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종자[접순(接筍)·꺾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이하 "중·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을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 또는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중·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절 산림용 중·묘 생산 등</p> <p>제12조(중·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① 법제16조제1항 진단에 따른 중·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p> <p>1. 산림용 중·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중·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중·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중·묘기술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p>	<p>제3절 산림용 중·묘 생산 등</p> <p>제13조(중·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중·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p> <p>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p> <p>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묘생산</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행 방범으로 등록한 경우</p> <p>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 생산업을 한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p> <p>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 추지 못한 경우</p> <p>5.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금지 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 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 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2.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 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 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p> <p>다.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 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 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p> <p>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 한 자</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 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 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 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 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종·묘생산업등록증</p> <p>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⑥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 지사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 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⑦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 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 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 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 야 한다.</p> <p>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	---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모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모목생산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하여금 모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무害)·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p>	<p>제13조(중·모목생산사업자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 중·모목생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p>제14조(모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모목생산사업 등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구분이 모목인 자 2. 1해타르 이상의 포기(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모 생산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기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p>제16조(모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모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도보에 모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p> <p>② 모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감안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모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p>

<p>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제·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p> <p>⑤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 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금액을 모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p>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급리 6. 기업이윤 	<p>②산림청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품·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8조(산림용종자의 개발·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등록예정공고를 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은 등록일부터 20년까지는 해당 품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생산하지 못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예정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⑥품종등록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p>	<p>제19조(버섯종균의 등록)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 종균”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 중 표고버섯·갯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그 밖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p> <p>②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0조(품종등록절차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p>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버섯종균</p>	<p>제20조(품종등록절차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p>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버섯종균</p>

범 례	시행령	시행규칙
		<p>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의 신 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품종의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 구든지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사유를 기 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산 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⑥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 사결과에 따라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버섯 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한 후 그 신청인 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버섯종균 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 적격품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 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 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 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p>

<p>⑦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⑧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p>		<p>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 또는 수형목(秀型木)(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를 조성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우량한 조림용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p>
<p>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별채신고 등)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축척 1천200분의 1) 1부</p>	<p>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p>	
<p>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p>		

범률	시행령	시행규칙
<p>3. 학교시설·산업시설·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p> <p>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등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채종림등에서는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p> <p>⑥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제64조(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야와 임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임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조립(의무조립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관리
5.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12.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 65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림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 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 	

<p>제67조(보고·검사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p>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입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p>	<p>제71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①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묘목조사·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p>
---	--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p> <p>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또는 규격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p> <p>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p> <p>7. 녹색자금관리단</p> <p>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68조(청문)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
 5.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회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 제6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한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범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④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임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1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 시설 설치의 타당성 평가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 3. 법 제55조에 따른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 4. 법 제65조에 따른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p>②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 2. 법 제18조제2항 중 품종등록예정 공고에 관한 권한
 - 3. 법 제18조제4항 중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권한
 - 4. 법 제19조제1항 중 채종원 및 채수포 조성에 관한 권한
 -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격, 품질기준의 제·개정 및 품질의 표시방법·고시에 관한 권한
 - 6.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격 또는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하는 권한
 - 7.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부제의 사용 등에 관한 지침의 제정과 그에 따른 지도에 관한 권한
 - 8. 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등에 관한 권한
 - 9.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③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범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이 경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p>④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채종림 및 수형목의 지정·관리·해체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채종림등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 수리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산림용종자·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지명명에 관한 권한 <p>⑤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권한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안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 수리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⑥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의 허가
5.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임산하는 것의 금지조치
6. 법 제5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임산의 허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6장 별 칙</p> <p>제71조(벌칙) ①타인소유의 산림이나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또는 보호수에 방화(放火)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73조(벌칙) ①산림에서 그 산물(조립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竊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 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2. 주근(株根)을 채취한 때 3. 장물(贓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제(造材)의 설비를 한 때 		

4. 임목 또는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때

5. 야간에 절취한 때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77조(벌칙) ①제5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감리한 자</p> <p>3. 제5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5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p> <p>5.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을 한 자</p> <p>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품종을 생산한 자</p> <p>3.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p> <p>4.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p> <p>5.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물에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p>		

<p>7.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p> <p>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7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목벌채 등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산림청장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p>	<p>제72조(과태료 부과)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p> <p>②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	--	--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p> <p>2.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3. 제5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p> <p>4.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p> <p>5.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p> <p>3. 제5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 자</p>	<p>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④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5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p> <p>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p>	<p>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p> <p>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	--	--

시행령	시행규칙						
<p>법률</p> <p>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부칙 <제07678호, 2005.8.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山林法」은 이를 폐지한다.</p> <p>제4조(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표의 왼쪽간의 처분등은 이법에 의한 오른쪽 간의 처분등으로 본다</p> <table border="1" data-bbox="891 1294 1193 1796"> <tr> <td>종전의 산림법</td> <td>이번에 의한 처분 등</td> </tr> <tr> <td>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td> <td>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td> </tr> <tr> <td>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종림등</td> <td>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종림등</td> </tr> </table>	종전의 산림법	이번에 의한 처분 등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종림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종림등	
종전의 산림법	이번에 의한 처분 등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종림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종림등						